농어업회의소법안 심사보고서

2026.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6월 21일, 어기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6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4. 9. 12.)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5. 1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5. 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어기구 의원)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지역소멸 등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행정 주도 농정으로는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려움.

이 때문에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회의소를 설립·운영하여 농어민의 민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법정기구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우리 농어업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FTA, TPP 등으로 인한 시장 개방 확대, 농어가 인구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 등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체질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 농어촌 현실에 맞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

그러나 그동안 농어업 정책의 결정은 상대적으로 정부 주도로 하향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집행과정에서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농어업회의소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2023년 12월 현재 기초 단위에 26개, 광역 단위에 1개 등 총 27개의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여 운영 중임.

제정안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농어업회의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업회의소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림어업인 및 농림어업인단체 등이 정책의 수혜자인 동시에 정책결정의 파트너로서 정부 주도의 정책결정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취지로 보임.

향후 제정안에 대한 심사 시 이와 같은 제정안의 취지와 함께 기존 농민단체 등과의 차별화, 경비지원에 따른 관변단체화 우려, 농업 관련 기관과의 기능중복 및 수행역량 부족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제정안과 같은 취지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의원(제2100432호)·홍문표의원(제2105687호)·위성곤의원(제2106753호)·이개호의원(제2107709호) 대표발의 및 정부제출(제2112343호)〕과 「농림어업회의소법안」〔위성곤의원(제2112904호)·안호영의원(제2124181호) 대표발의〕을 병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농어업회의소법안」(제2126699호, 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의결(2024. 5. 28.)되어 정부에 이송(2024. 5. 28.)되었으나, 헌법 제53조[1]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1)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요구서가 제출(2024. 5. 29.)되었고,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2024. 5. 29.)된 바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